#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1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민형배·이형석·신정훈

김경만 · 홍익표 · 강병원

이정문 · 송갑석 · 김철민

양정숙 · 김남국 · 임호선

이병훈 · 이용빈 · 윤재갑

김성주・양향자・조오섭

장경태 · 이해식 · 유영덕

인재근 · 이학영 의원

(23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하고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기타지원금도 국가권력에 의해 고통을 받은 5·18민주화운

동 관련자에게 그 명예를 회복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상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 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이법에 따른 관련자와 유족에게 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
	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람에게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유족에게 준하여 의
	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